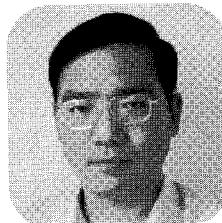


# 유기농식품 유통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살림 상임이사

조 완 영

그 래 먹을거리를 둘러싼 불안요소가 증폭되면서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요소는 곧바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국내산 유기농식품 뿐만 아니라 수입 유기농식품(외국산 유기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일부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외에서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의 유통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식품 유통·시장 현황, 유통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유기농식품 유통관리 상의 몇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유기농식품의 유통현황

(1) 국내산 유기농식품의 유통현황  
1990년 중반부터 소득수준 향상, 건강·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농약 과다 사용에 대한 위험성 고조,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국

내 유기농식품 수요량은 매년 약 40% 이상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 근래들어 웰빙이라는 새로운 문화 코드가 가세하면서 국내 유기농식품 수요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산 유기농식품은 대부분 다양한 직거래 형태의 시장외유통(비시장루트)으로 거래되고 때문에 각 취급단체나 유통업체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이상 그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유기농식품 유통업체와 농림부의 추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산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2004년의 경우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산 유기농산물은 생산자의 직접 배송·택배, 생산자와 소비자 제휴·신뢰관계, 생산자조직의 매장, 대형유통업체와 전문유통사업체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산 유기농식품은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신뢰관계, 전문판매점 등을 통해 농가공품의 성격으로 가공되어 소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보다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것

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근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생산자의 직접 배송·택배를 통하여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유통을 벗어나 농협유통과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 및 식품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 (2) 수입 유기농식품의 유통현황

근래 유기농 봄을 타고 유기농식품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여 2004년(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실적)에는 수입물량으로는 12.3배, 수입금액으로는 13.2배 늘어났다. 2004년의 경우 연간 유기농식품의 수입량은 약 9,400톤에 이르고, 수입액은 약 13,750천달러(한화 약 1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런 수입 유기농식품이 주로 어느 나라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004년(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수입금액 면에서는 EU가 50.4%, 미국이 26.7%, 중국이 10.0% 등으로 나타나고, 수입물량 면에서는 중국이 62.9%, EU가 18.6%, 미국이 13.3%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국의 경우 수입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물량이 많게 나타난 것은 최근 2~3년 사이에 콩 등의 가공원료 유기농산물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기농식품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로 대기업이 앞장서서 수입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판매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대부분은 수입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어졌거나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유기가공식품 재료 원산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원재료의 82.4%가 수입 유기농산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농관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9월까지 국내 민간인증기관(한농복구회와 코악스)에서 인증받아 수입된 유기농산물은 총 4,058톤, 검정콩, 100톤, 녹두 40톤, 참깨 271톤, 밀 305톤 등 총 4,774톤인데, 그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국내 식품기업의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기농식품의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추정해볼 때 수입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보다는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가공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물론이거니와 수입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수입 유기농식품이 국내 유기농식품 시장을 주도해간다면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국내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대안농업으로서 시작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수입 유기농식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가공원료인 유기농산물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는 농림부(농관원)와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내 및 수입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농관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또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국내 유기농식품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근거하여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95%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어야 하지만 가공된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강제 인증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또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식약청이 관리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품질기준이 우선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품질기준이 적용되며, 또 수출국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있으면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할 때 자국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중 유기농식품에 관한 규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첫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인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해당 품질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규정에 없는 원재료의 품질기준을 수출국 기준에 맞춰 '유기'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국내 인증기준과 인증기관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규정에 맞지 않은 유기농산물은 마땅히 '유기' 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 유기가공식품이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신인도가 높은 국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현재 식약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 유기농식품 인증기관은 235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국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대신함으로써 수입 유기 가공식품의 국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국내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국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 내에 남아 있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 100%'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 100%', '유기' 표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 유기농 함량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제품별로 총함량만 표시하거나 원료별 함량을 선별 표시하는 등 각각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유기농 총함량이 100%미만인데도 개별원료 자체만을 기준으로 유기농 100%와 유사한 표시를 주표시면에 하고 총함량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



### 유기농식품 유통관리 상의 개선과제

앞서 유기농식품의 유통관리 현황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토대로 유기농식품 유통관리 상의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농산물 인증표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매시장유통·일반소매유통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인증표시제가 절대적 선결과제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거래유통은 그 인증표시에 절대적인 요구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의 의무 인증표시제가 법제화되기 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신뢰관계 구축을 토대로 하여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온 경우까지 법적 의무 인증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법적 적용 제외)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생산자(생산자조직)과 수입업자의 인증표시가 가능하지만, 취급자(유통업자)의 인증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유기농산물을 개별 농가나 작목반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수매하여 소포장하는 품목의 경우(쌀, 양파, 당근 등) 표시인증마크를 부착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급히 취급자 인증표시제가 도입·적용되어야 한다. 애써 유기농산물을 생산했지만, 유통과정에서 인증마크를 부착할 방법이 없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부정표시에 따른 법적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셋째,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위생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관련규정을 모아 통일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차 농산물(원료농산물)에서 최종생산물(가공식품)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농식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유기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의무 인증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내 및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발하는 유사 유기인증을 막기 위해 국내 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인증기관의 명칭, 로고, 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소극적인 정책접근보다는 별도 (가칭)유기식품생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개정해야 한다. 100%,

95%이상의 유기농 함량의 경우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유기' 표시 옆에 유기농 총함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제조에서 통관, 저장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기가공식품은 표시기준에 의해 비유기 가공식품과 구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GMO의 경우와 같이 비유기식품과 혼입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곱째, 유기농업의 이념이나 원리로 볼 때 아무리 유기적으로 생산된 유기농식품이라 하더라도 화석원료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유기'라는 언어를 붙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우선시하고 환경부하가 큰 유기농산물의 원거리 및 대량운송을 금지하는 조항, 즉 푸드 마일리지 관련 조항을 코덱스식품가이드라인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RM)의 기초기준에 넣어야 하며,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근래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지역농업과 국내농업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대안농업으로서 유기농업이 등장하여 실천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유기농업이 진정한 대안농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기농식품 유통관리의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또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진정한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산업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생산과 소비의 분단, 인간생활과 자연의 분단이라는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농연**